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04
----------	-----

2017. 10. 24(화)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-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진섭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 채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반영하고,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('17.1.6)에 따라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수의직렬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역학조사관(의사)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 신설(제2조의2)

- 대 상 : 의무직(임기제 포함) 공무원으로서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
- 수당액 : 전문의 월 909,000원 / 일반의 월 818,000원

○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(장려수당) 지급기준 신설(제2조의3)

- 대 상 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
- 수당액 : 월 270,000원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호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704호
의결 연월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9월 2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704

제출연월일 : 2017년 9월 29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 채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반영하고,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17.1.6)에 따라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수의직렬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역학조사관(의사)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 신설(제2조의2)

- 대 상 : 의무직(임기제 포함) 공무원으로서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
- 수당액 : 전문의 월 909,000원 / 일반의 월 818,000원

나.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(장려수당) 지급기준 신설(제2조의3)

- 대 상 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
- 수당액 : 월 27만원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입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입

6. 비용추계서 : 불 입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의료업무 등의 수당) 영 별표 9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의2와 같다.

제2조의3(장려수당)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의3과 같다.

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의2]

일반직(임기제)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2조의2 관련)

구 분	전문의	일반의
월 수당 지급액	월 909,000원	월 818,000원

* 비고 : 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1의3]

장려수당 지급 구분표(제2조의3 관련)

지급대상	지급액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	월 270,000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의료업무 등의 수당)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「의 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의2와 같다.						
<u><신 설></u>	제2조의3(장려수당) 영 별표9 제8 호의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 급하는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 의3과 같다.						
<u><신 설></u>	별표 1의2 일반직(임기제)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2조의2 관련)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전문의</th><th>일반의</th></tr><tr><td>월 수당 지급액</td><td>월 909,000원</td><td>월 818,000원</td></tr></table>	구 분	전문의	일반의	월 수당 지급액	월 909,000원	월 818,000원
구 분	전문의	일반의					
월 수당 지급액	월 909,000원	월 818,000원					
<u><신 설></u>	별표 1의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(제2조의3 관련) <table><tr><th>지급대상</th><th>지급액</th></tr><tr><td>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 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 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사람</td><td>월270,000원</td></tr></table>	지급대상	지급액	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 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 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사람	월270,000원		
지급대상	지급액						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 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 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사람	월270,000원						

관 계 법 령 발 체

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
제14조(특수업무수당)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.

[별표 9] <개정 2017. 1. 6>

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14조 관련)

구분	수당명	지급대상	지급액 및 지급방법
기술 분야	2. 의료 업무 등의 수당	가. 의무·약무·간호직·보건진료직 공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의무·약무·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,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)으로서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 및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·근무하는 공무원	1) 의무직렬 공무원,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: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) 약무직렬 공무원: 월 70,000원 3) 간호직렬 공무원: 월 50,000원
특수 행정 분야	8. 장려 수당	가~사 생략 아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	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
비고: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법률안 개정 중)

제60조의2(역학조사관)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, 시·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. 다만, 시·도 역학조사관 중 1인은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.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개정이유

-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6.01.07)에 따라 의료업무 수당을 반영하여 역학조사관 채용의 원활을 기하고
-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('17.01.06)에 따라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(장려수당)을 개정 반영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 :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기준 신설

- 역학조사관(의사)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기준 신설
 - ▶ 대 상 : 의무직(임기제 포함) 공무원으로서 「의료법」 제2조2항의 의료업무행위를 하는 사람
 - ▶ 수당액 : 전문의 월 909,000원 / 일반의 818,000원
- 도축장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기준 신설
 - ▶ 대 상 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
 - ▶ 수당액 : 월 27만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의료업무 수당 및 장려수당 신설에 따라 수당 지급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의료업무 등의 수당)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의2와 같다.

제2조의3(장려수당) 영 별표9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1의3과 같다.

별표 1의2 및 별표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1의2]

일반직(임기제)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2조의2 관련)

구 분	전문의	일반의
월 수당 지급액	월 909,000원	월 818,000원

*비고 : 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1의3]

장려수당 지급 구분표(제2조의3 관련)

지급대상	지급액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	월 270,000원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지급대상 : 의료업무수당 의무직 1명(전문의 기준), 장려수당 수의직 15명
- 도축장 근무자 장려수당의 경우 실제 인상되는 금액은 1인당 월12만원
- ※ 특수업무수당 상호간 병급 금지(기존 의료업무수당-15만원 지급 정지)

나. 추 계 결 과 : 향후 5년간 138,159천원 세출 추계(연간 32,508천원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로 충당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행정국 총무과장 안석영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‘17년)	2차년도 (‘18년)	3차년도 (‘19년)	4차년도 (‘20년)	5차년도 (‘21년)	계
세 입						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기타(사업수입)							
세 출		8,127	32,508	32,508	32,508	32,508	138,159
인건비		8,127	32,508	32,508	32,508	32,508	138,159
재원 조달		8,127	32,508	32,508	32,508	32,508	138,159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	도 비						
자체 수입	소 계	8,127	32,508	32,508	32,508	32,508	138,159
	지방세	8,127	32,508	32,508	32,508	32,508	138,159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△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구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